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명)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비 고
			일반인	국가 유공자 (보훈청 추천)	장애	저소득층	계	제1차	제2차	
공 개 경 쟁	9급	교육 행정	71		6	3	80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중 2과목(선택)	
		사서	5				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공업 (일반 전기)	2				2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식품 위생	3				3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조리	21	9			30	국어, 한국사	위생관계법규	
소계			102	9	6	3	120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비 고
			일반인	국가 유공자 (보훈청 추천)	장애	저소득층	계	제1차	제2차	
경력 경쟁	9급	공업 (일반 전기)	1				1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운전	14	6			20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소계			15	6			21			
합계			117	15	6	3	141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에서 출제됩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교육행정직렬 및 사서직렬의 경우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선택형

※ 단, 9급 운전직렬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만 제1·2차 시험(필기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필기시험 과목수 및 시간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사서, 공업, 식품위생	조리	공업	운전
과목수	5과목	3과목	3과목	2과목
시험시간	100분	60분	60분	40분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결격사유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구 분	직급 및 직렬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교육행정, 사서, 공업, 식품위생, 조리)	18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공업, 운전)	18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가)번과 나)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남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성별 : 제한없음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 제한

1) 아래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공개경쟁] 사서, 조리 [경력경쟁] 공업, 운전의 경우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급	직렬	직류	학력 자격(면허)증 경력 제한				
공개 경쟁 임용 시험	9급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조리	조리	<table border="1"> <tr> <td>기능장</td> <td>조리기능장</td> </tr> <tr> <td>산업기사</td> <td>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북어)</td> </tr> <tr> <td>기능사</td> <td>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북어)</td> </tr> </table>	기능장	조리기능장	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북어)
기능장	조리기능장							
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북어)							
기능사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북어)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공업	일반 전기	해당(관련) 학과: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운전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운전면허)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 이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운전직렬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운전면허)**은 유효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2018. 2. 9.)** 이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고, 이 경우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 생략
(※ 단, 대형버스 운전경력이란 대형버스 운전을 주 업무로 하는 것임)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승차정원이 36인 이상,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 길이 9미터 이상)
- ② 2015. 2. 10.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 ③ 2015. 2. 10.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

- 응시대상자는 위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를 **2018. 3. 26.(월) ~ 3. 30.(금) 18:00**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로 등기우편(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결과 불합격자는 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 응시대상자는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와 별도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서류전형결과 불합격자는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반환이 불가하니, 원서접수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9급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 》

- ①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이전주소 포함된 공고일 이후 발행분)
- ② **1종 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
- ③ **경력증명서 1부** (「서식1」 사용, 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경력)
- 경력기간 : 시험시행 공고일(2018. 2. 9.) 이전 경력
- ④ **근무사실확인서 1부** (「서식2」 사용, ‘③ 경력증명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위탁업체’의 근무로 경력증명서상의 소속회사명과 근무지가 다른 경우에 제출함
- ⑤ **군운전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1종 대형 운전면허로만 가능한 차량의 운전경력(운전기간, 운전차종)이 기재되어야 함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⑦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최근 3년간 운전경력이 기록된 증명서 발급(2015. 2. 10. ~ 원서접수기간 내)

※ 제출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우편번호 51430)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채용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지방공무원 운전직렬 채용서류 재증” 반드시 표기>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4. 13.(금)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

3)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아래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명	임용예정직렬(직류)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관련)학과
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업(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별첨으로 첨부한 “경상남도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1)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2) 장애인 응시대상자 중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운전·조리직렬】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응시 희망자는 2018. 2. 23.(금)까지 해당 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3) 추천과는 별도로 당해시험의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

수하여야 합니다.

- 4) 보훈청추천 관련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경남동부보훈지청(☎055-981-56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전직렬 응시 대상자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운전)]을 반드시 숙지하여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단, 조리직렬 응시 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자격증 제출)
- 6)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보훈청추천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1) 응시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부터)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라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응시대상자 중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

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4. 문제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구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문제 공개여부	문제책 회수 여부
위탁 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물리	공개	미회수
공동 출제	17개 시·도교육청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비공개	회수

5.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접수기간 2018.3.26.(월) ~ 2018.3.30.(금) 취소기간 2018.3.31.(토) ~ 2018.4.2.(월)	필기시험	2018.5.8.(화) 10:00	2018.5.19.(토) 10:00	2018.6.22.(금) 10:00
	면접시험	2018.6.22.(금) 10:00	2018.7.14.(토) 10:00	2018.7.27.(금) 10:00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서류 추천서 제출일 : 2018. 3. 12.(월) ~ 3. 15.(목) ※ 운전직렬 서류전형 제출일 : 2018. 3. 26.(월) ~ 2018. 3. 30.(금) ※ 운전직렬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 대상자) 발표일 : 2018. 4. 13.(금)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방법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ne.go.kr>) 알람마당/ 시험정보/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게시판 및 경상남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edurecruit.gne.go.kr/cso_cmm_cm99_001.do)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ne.go.kr>) 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수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8. 3. 26.(월) 09:00 ~ 3. 30.(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edurecruit.gne.go.kr/cso_cmm_cm99_001.do)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24:00 ~ 08:00 사이 우리교육청의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처음 접속한 PC인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됨에 유의 바랍니다.

※ 접수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되며, 접수마감일에 원서 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취소 : 2018. 3. 31.(토) 09:00 ~ 4. 2.(월)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도 접수 취소 가능)

4)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를 카드결제(체크카드 제외),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8.3.30.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원서 접수 마감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 환불)

5) 응시원서 사진 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크기 3.5cm×4.5cm(140×180pixel이상) 기준, 파일용량 9kbyte이상 100kbyte미만, jpg 형식 파일만 가능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사진으로써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6) PC 운영체제 윈도우 7~10과 익스플로러 버전 7~11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모든 응시대상자는 창원시 소재 필기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 2)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3)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4) 취소마감일까지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하고, 접수 마감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절 환불하지 않습니다.
- 5)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 6)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 주민등록초본, 자격증 원본 및 사본, 장애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저소득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
- 7) 공업(일반전기)직렬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8) 운전·조리직렬 중 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경남동부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 받은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9)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원서 접수 사이트의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매뉴얼」 참고

- 10)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동일 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표 출력

- 1)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2018. 5. 14.(월) 10:00부터 2018. 5. 19.(토) (필기시험 당일)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 응시표는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2)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 (2018.5.14.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7. 가산점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 및 가산점 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각각 적용
의사상자 대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렬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1개, 직렬별 1개) • 가산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시 적용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1개]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대상자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 3) 의사상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등에 확인하여야 하며, 의사상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관련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 분야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단, 2012.1.1.이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인정(2·3급 제외)합니다.]

2) 직류별 가산점

▶ 직렬(직류)별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9급			변호사	5%
식품위생 9급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5%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3%
공업(일반전기) 9급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5%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가산비율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의사상자 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자 증서번호 또는 의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해야하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관련부서로 가산비율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 또는 미기재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3)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특전”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 선발예정인원 5명 미만과 경력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적용되지 않음

나. 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 상의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 됨)
- 라.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과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마.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스마트워치 등 일체의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될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의 지참 및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 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 시험 종료 후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위탁 출제한 문제지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 아. 필기시험에서 과락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하여야 과락에 해당되지 않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 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0. 기타사항

- 가.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에 공고합니다.
-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

-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다. 최종 합격 후 근무예정지역은 경상남도내 전 지역으로 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5-268-1355)

